

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479
------	------

2021. 6. 16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5월 27일, 최선 의원 외 28명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다. 상정결과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21. 6. 16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최선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전컨설팅 및 발명비용 선지급 제도 신설함(안 제5조제2항).

나.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함(안 제16조).

(1) 특허권 100만원 → 200만원

(2) 실용신안권 50만원 → 100만원

(3) 디자인권 30만원 → 60만원

다. 발명비용 지급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함(안 제16조).

(1) 발명비용 500만원 → 700만원

라. 상향된 등록보상금 및 발명비용은 조례시행 이후에 직무발명권리 승계를 위한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(안 부칙 제2조).

마. 직무발명 홍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홍보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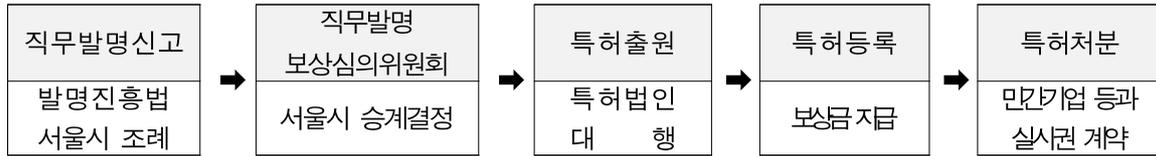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제고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지원 및 발명비용 선지급, 등록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한도 상향 조정, 직무발명 홍보업무의 실시와 전문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나. 직무발명 제도 운영 현황

- 특허청에 따르면, 우리나라 특허 출원의 80% 이상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우수한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, 시유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- 직무발명의 실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승계하고 발명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고 있음.

< 직무발명 업무 추진 절차 >



- 지난 5년간 공무원 직무발명 실적을 살펴보면, 신고 188건 중 110건이 승계되었고, 이 중 총 70건이 등록되었음(특허 59개, 실용신안 5건, 디자인 6건).

<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>

(단위 : 건)

연도	신 고				승 계				비승계	반려 등
	계	특허	실용신안	디자인	계	특허	실용신안	디자인		
계	188	164	14	10	110	97	5	8	57	23
2020	47	45	1	1	36	35	0	1	11	0
2019	31	30	0	1	18	17	0	1	10	4
2018	32	26	6	0	19	16	3	0	9	5
2017	32	27	2	3	16	14	0	2	9	7
2016	46	36	5	5	21	15	2	4	18	7

※ 2021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는 8월 중 개최 예정

다. 등록보상금 지급금액 등의 상향 조정(안 제16조)

- 안 제16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과 발명비용의 지급 한도를 현재보다 40~100%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음.

- 상향 조정된 금액의 적용시점은 조례 시행일 이후 시장에게 직무 발명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로 정하고 있음(부칙 제2조).

< 직무발명 지원범위 확대 현황 >

(단위 : 만원)

구 분	현 재	개정안	비 고
등록보상금 (제16조①)	특허 100 실용신안 50 디자인 30	특허 200 실용신안 100 디자인 60	100% 상향
발명비용 (제16조②)	500 이내	700 이내	40% 상향
처분보상금 (제17조)	처분수입의 100분의 50	좌동	

- 최근 3년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, 특허건수와 등록보상금은 증가하고 있으나, 외부에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처분보상금은 감소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사유재산권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
<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등록보상금	발명비용	처분보상금	
2018년	특허	12건	3건	22건
	실용신안	3건	2건	1건
	디자인	2건	-	7건
	합계(천원)	14,100	18,261	16,903
2019년	특허	7건	5건	30건
	실용신안	-	1건	1건
	디자인	1건	-	6건
	합계(천원)	7,300	19,434	32,414
2020년	특허	17건	3건	9건
	실용신안	1건	-	3건
	디자인	-	-	2건
	합계(천원)	17,500	10,827	25,409

- 특히, 부산 등 일부 광역 시·도에서 보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, 2013년에 정한 등록보상금과 발명비용의 상향 현실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< 타 시·도 직무발명 보상기준 현황 >

('20.11월 현재, 단위: 만원)

지방자치단체	등록보상금 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)	발명비용	처분보상금 지급 비율(%)
서울특별시	100/50/30	500	50
광주광역시	200/120/80	-	50
대구광역시	150/100/50	-	50
부산광역시	150/100/50	-	50
울산광역시	150/100/50	-	50

라. 사전상담과 발명비용 선지급 도입(안 제5조)

- 안 제5조 제2항은 직무발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전상담과 발명비용의 선지급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- 사전상담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발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어 직무발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발명비용의 선지급은 직무발명 초기에 필요한 재료나 설비 등의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직무발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발명을 장려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음.

마. 설명회의 개최와 전문기관의 위탁(안 제33조 신설)

- 안 제33조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시유평특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,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지난 5년 간 직무발명의 처분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실시료 수입 또한 감소하고 있음.

< 최근 5년간 직무발명 처분 및 실시료 현황 >

(2021. 6월 기준, 단위 : 건)

연도	처분 현황				
	계	특허	실용신안	디자인	실시료(천원)
계	138	99	11	28	183,274
2021	17	15	0	2	10,308
2020	14	9	3	2	25,409
2019	37	30	1	6	32,414
2018	30	22	1	7	16,903
2017	44	26	6	12	112,165

※ 실시권 계약 건수를 기준 및 실시료 정산연도 기준

-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발명 설명회는 시유평특허에 대한 홍보와 수요 기업의 발굴로 시유 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

발 의 자 : 최 선, 강대호, 권수정,
권영희, 김기덕, 김정환,
김제리, 김춘례, 김태수,
김평남, 김희걸, 박기재,
박상구, 서윤기, 송아량,
양민규, 여 명, 이경선,
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
이준형, 이태성, 임종국,
장상기, 장인홍, 전석기,
한기영, 홍성룡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전컨설팅 및 발명비용 선지급 제도 신설함(안 제5조2항).

나.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함(안 제16조).

- (1) 특허권 100만원 → 200만원
- (2) 실용신안권 50만원 → 100만원
- (3) 디자인권 30만원 → 60만원

다. 발명비용 지급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함(안 제16조).

(1) 발명비용 500만원 → 700만원

라. 상향된 등록보상금 및 발명비용은 조례시행 이후에 직무발명권리 승계를 위한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(안 부칙 제2조).

마. 직무발명 장려를 위해 홍보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 신설함 (안 제 33조). 직무발명 홍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홍보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명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'20. 11. 12.~12. 2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제5조 1항으로 하고 제5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직무발명 장려를 위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발명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제1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200만 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0만원”을 “100만 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30만원”을 “60만 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500만원”을 “700만 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,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)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시유특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보상금 및 발명비용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16조의 개정

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
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발명자에 대한 보상) 시는 제4조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제16조(등록보상금 등)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특허권 <u>100만원</u> 2. 실용신안권 <u>50만원</u> 3. 디자인권 <u>30만원</u> <p>② 발명비용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최대 <u>500만원</u>까지 지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제33조(시행규칙) (생 략)</p>	<p>제5조(발명자에 대한 보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장은 직무발명 장려를 위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발명비용을 선지급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6조(등록보상금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 <u>200만 원</u> 2. ----- <u>100만 원</u> 3. ----- <u>60만 원</u> <p>② ----- ----- -----<u>700만 원</u>----- -----.</p> <p>제33조(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) ① <u>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시유 특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34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	2021040100000008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최선 의원 접수일 : 2021.04.01 회신일 : 2021.04.02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내용문의 : 02-2180-7943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(발명자에 대한 보상 등)제2항 및 제16조(등록보상금 등)에 따라 비용 발생
- ※ 제33조(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)는 홍보 및 설명회 등 관련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- 2021년 ‘제도개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’ 예산 : 10,000천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1) 추계결과 = 120,600천원(연평균 24,12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1~2025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안 제5조제2항의 사전상담(컨설팅) 제공 건수는 서울시 ‘21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추진계획’에 따라 접수건수 중 20% 수준으로 선정하되, 연간 제공 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직무발명 접수건수 36.7건의 20%인 8건으로 전제
 - ※ 최근 3년간(’18~’21년) 직무발명 접수건수 : ’18년 32건, ’19년 31건, ’20년 47건
 - 안 제16조제1항의 연간 등록보상금 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직무발명 승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적용하여 특허권 22건, 실용신안권 1건, 디자인 1건으로 전제
 - ※ 최근 3년간(’18~’20년) 직무발명 승계 등록보상금 지급 건수

(단위 : 건)

구분	계	특허권	실용신안권	디자인
평균	24	22	1	1
2018년	18	15	3	-
2019년	17	16	-	1
2020년	36	35	-	1

자료 : 서울시 조직담당관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2)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비용(합계) = 120,600천원(연평균 24,120천원)

- 총비용 = 사전상담(컨설팅) 제공비+등록보상금
 = 6,600천원+114,000천원
 = 120,6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	계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사전상담(컨설팅) 제공 (제5조제2항)		1,320	1,320	1,320	1,320	1,320	6,600
	등록보상금 (제16조제1항)		22,800	22,800	22,800	22,800	22,800	114,000
	소계(b)		24,120	24,120	24,120	24,120	24,120	120,600
□ 총 비용(b-a)			24,120	24,120	24,120	24,120	24,120	120,600

○ 사전상담(컨설팅) 제공비 = 6,600천원

= 연간 사전상담(컨설팅) 제공비 × 5년

- 연간 사전상담(컨설팅) 제공비 = 1,320천원

= 사전컨설팅 비용 × 연 제공건수

= 165천원 × 8건

= 1,320천원

※ 사전컨설팅 비용 :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‘2021년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
 특허관련 업무수행 용역’ 산출내역서의 사전컨설팅 단가 165천원 적용

○ 등록보상금 = 114,000천원

= 연간 등록보상비 × 5년

- 연간 등록보상비 = 22,800천원

= 특허권 등록보상비+실용신안권 등록보상비+디자인 등록보상비

= 22,000천원+500천원+300천원

= 22,800천원

· 특허권 등록보상비 = 22,000천원

= 특허권 등록보상금 × 연 지급건수

= 1,000천원 × 연 22건

- 실용신안권 등록보상비 = 500천원
= 실용신안권 등록보상금 × 연 지급건수
= 500천원 × 연 1건
- 디자인 등록보상비 = 300천원
= 디자인 등록보상금 × 연 지급건수
= 300천원 × 연 1건

나. 기술적 추계 곤란(제3조제1항제2호)

○ 안 제16조제2항(발명비용)

- 제16조제2항 개정에 따른 발명비용 지급한도 200만원 증액(500만원 → 700만원)은 최근 3년간('18~'20년) 발명비용 지급건수가 총 14건으로 이중 500만원 한도까지 지급받은 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한도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기술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

※ 최근 3년간 ('18~'20년) 발명비용 지급 현황

(금액단위 : 원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
지급건수	5건	4건	5건
계	14,984,000	12,584,400	15,100,160
1	5,000,000	3,300,000	3,820,000
2	1,184,000	1,970,000	3,030,000
3	2,500,000	2,420,000	2,500,000
4	2,500,000	4,894,400	4,032,200
5	3,800,000		1,717,960

자료 : 서울시 조직담당관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예산분석관 박주용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